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4.
발의자 : 전현희 · 홍기원 · 이건태
이성윤 · 황정아 · 이학영
유동수 · 서영교 · 김영환
염태영 · 김병주 · 강준현
문진석 · 김현정 · 최혁진
박홍배 · 김용만 · 박지원
김문수 · 김윤 · 장종태
허종식 · 이병진 · 권향엽
이광희 · 정일영 · 문금주
의원(2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.

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, 기존의 민원 · 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동 개정안에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.(안 제12조제16호).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6호 중 “온라인 국민참여포털”을 “AI 국민신문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15. (생략)</p> <p>16. <u>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·운영</u></p> <p>17. ~ 21. (생략)</p>	<p>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16. <u>AI 국민신문고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17. ~ 21. (현행과 같음)</p>